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35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35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09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조미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모두 담당변호사 유진희

변론 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099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을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2쪽 제17, 18행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원고와 함께 새로운 C계를 운영하자는 피고의 거짓 제안에 기망당하여 원고가 송금한 5,052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4,170만 원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며, 제3쪽 제15행의 "원고의 위 주장을"을 "피고가 4,17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안동철

판사이효진